

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6월 26일
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

공 시 송 달 서

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사업체에 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의 내용을 공시송달합니다.

1. 처분의 제목 : 항만운송(관련)사업 행정처분

2. 처분의 당사자

사업의 종류	업체명	대 표	신고 주소
항만용역업	디앤디	허수빈	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 349,703호
	에스씨엘로지스	윤기철	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02, 천마빌딩 610호
선용품공급업	지혜산업	임지혜	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56번길 51-1

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및 법적 근거

종 류	업체명	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행정처분의 내용	법적근거
항만용역업	디앤디	사업수행실적 1년 이상 없음(1차 위반)	사업정지 3개월 (2026. 6. 9 ~ 9. 8.)	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
	에스씨엘로지스	사업수행실적 1년 이상 없음(2차 위반)	등록취소	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
선용품공급업	지혜산업	사업수행실적 1년 이상 없음(2차 위반)	사업정지 6개월 (2026. 6. 9 ~ 12. 8.)	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

4. 기타사항

- 가.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나. 항만운송(관련)사업자는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할 경우 항만운송사업법령에 따라 등록을 취소합니다. 본 공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.
- 다. 항만운송(관련)사업자는 등록취소 처분 이후 사업을 계속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 본 공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.
- 라. 당사자 등은 폐업 등으로 사업을 중단한 경우 또는 휴업·회사사정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항만운송(관련)사업 신고확인증(등록증)을 반납하여야 합니다.
- 마.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청 항만물류과(054-245-1538, 백창훈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